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호

**노원구 월계동 390-35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
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**

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33항, 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390-35호 ()
제28조 제28항, 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390-35호
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390-35호
()
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5항, 「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5항

2023. 2. 9.

- ()
1. ,
○ : 390 - 35 ()
○ : 390 - 3, 390 - 4, 390 - 13, 390 - 32, 390 - 35
○ : 1,671.0m²
 2. : 2023. 2. 9.
 3. : ()
 4. ,
○ : 101
○ :
○ : 30, 305 - 1035 (,)
○ : 110111 - 8288650

5. , , , ,
(),

1)

연번	소재지		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지번	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		본번	부번									
1		390	3	도	145	145	[위탁자] 주식회사 플랫101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, 305-1035호 (별내동, 별내로데오몰)	1/1	-	-	-
2		390	4	대	443	443				-	-	-
3		390	13	대	183	183				-	-	-
4		390	32	도	163	163				-	-	-
5		390	35	대	737	737				-	-	-
합계					1,671	1,671						

2)

연번	소재지	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사용 승인일자		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		연면적 (㎡)	지하 (층)	지상 (층)		성명 또는명 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		본번	부번												
1	노원구 월계동	390	4	대	교육연구시설 (유치원)	철근 콘크리트조	1996.05.23	752.6	1	3	주식회사 플랫101	-	-	-	-
2		390	13	대	주택	연와조	1980.09.08	162.81	1	2		-	-	-	-
3		390	35	대	근린생활시설	철근 콘크리트조	1983.08.04	650.76	1	3		-	-	-	-
합계								1,566.17							

6. 「 」 30 .

1) :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광운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노원구 월계동 402-53번지 일대	56,413	-	56,413	서고시 제147호 (2010.4.22.)	-

7. : 2 6 (20 - 2133 - 6298)
3 (02 - 2116 - 3867)

- 1.
- : 390 - 35 ()
 - : 390 - 3, 390 - 4, 390 - 13, 390 - 32, 390 - 35
 - : 1,671.0m²
 - : 「 ()

- 2.
- : 101
 - :
 - : 30, 305 - 1035 (,)
- 3.
- : ~ 2025
 - :
- 4.

구 분	면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,671.0	100.0	
주택건설용지	1,309.0	78.3	역세권 청년주택
도 로	362.0	21.7	-

- 5.
- 1) : 152
- 2) : 103

구분		세대수(세대)	비율(%)	수용인구(인)	비율(%)	비고
공공 임대	44 Type	2	1.9%	2	1.3%	청년주택
	52 Type	4	3.9%	11	7.2%	신혼부부
	57 Type	7	6.8%	19	12.5%	신혼부부
	소 계	13	12.6%	32	21.0%	-
SH 선매입	25 Type	8	7.8%	8	5.3%	청년주택
	소 계	8	7.8%	8	5.3%	-

구분		세대수(세대)	비율(%)	수용인구(인)	비율(%)	비고
공공 지원 민간 임대	25 Type	10	9.7%	10	6.6%	청년주택
	26 Type	11	10.7%	11	7.2%	청년주택
	27 Type	23	22.3%	23	15.1%	청년주택
	36 Type	3	2.9%	3	2.0%	청년주택
	37 Type	5	4.8%	5	3.3%	청년주택
	41 Type	11	10.7%	11	7.2%	청년주택
	44 Type	1	1.0%	1	0.7%	청년주택
	52 Type	14	13.6%	37	24.4%	신혼부부
	57 Type	4	3.9%	11	7.2%	신혼부부
	소계	82	79.6%	112	73.7%	-
총계		103	100.0%	152	100.0%	-

※ 전용면적 25㎡, 26㎡, 27㎡, 36㎡, 37㎡, 41㎡, 44㎡ : 대학생·사회초년생(청년형)의 가구당 인구수(1인/가구)를 적용

※ 전용면적 52㎡, 57㎡ : 신혼부부의 가구당 인구수(2.65인/가구)를 적용

6. . .

1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A	4~6m	국지도로	75	월계동 390-7	월계동 388-2	일반도로	-	-	-

※ 신설도로 무상 기부채납

2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전용면적	비고
공공시설	작은도서관	문화시설	지상2층	125.296㎡	기부채납

7.

1)

가)

- () (,)

- , ,

)

-

,

.

2)

가)

-

가

,

-

가

)

-

,

)

-

8.

: [] ()

[]

1. ()

1) ()

가) : (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광운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노원구 월계동 402-53번지 일대	56,413	-	56,413	서고시 제147호 (2010.4.22.)	-

2)

가) (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주거 지역	소계	1,671.0		1,671.0	100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,671.0	감) 1,309.0	362.0	21.7	
	준주거지역		증) 1,309.0	1,309.0	78.3	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노원구 월계동 390 - 35번지 일원	제2종 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1,309.0	법정 용적률 이하	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함

$$) \quad :$$

) (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A	4~6m	국지도로	75	월계동 390-7	월계동 388-2	일반도로	-	-	-

1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3-A	- 도로 신설 - 폭원 4~6m - 연장 75m	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

3)

가) ()

(1)

()

가구 번호	면적 (㎡)	지 번	면적 (㎡)	계획내용	비 고
A2	969	월계동 390-15,16,17	272	공동개발권장	적정개발규모 확보
A3	4,354	월계동 382-35,50	242	공동개발권장	적정개발규모 확보
		월계동 390-26,27, 산144-1	823	공동개발지정	기공등건축

가구 번호	면적 (㎡)	지 번	면적 (㎡)	계획내용	비 고
A2	786	월계동 390-15,16,17	272	공동개발권장	적정개발규모 확보
A3	3,174	월계동 382-35,50	242	공동개발권장	적정개발규모 확보
		월계동 390-26,27, 산144-1	823	공동개발지정	기공등건축
A12	1,309	월계동 390-3,4,13,35	1,309	공동개발지정	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

도면표시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변경사유
-	A2	786	역세권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가구면적 감소
-	A3	3,714	역세권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가구면적 감소
-	A12	1,309	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

)

(1)

구분	지정용도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	◦ 공동주택(주거복합) ^{주1)} ◦ 근린생활시설 ^{주2)}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(단, 오피스텔은 제외)

주2) 근린생활시설은 지하2층~지상2층에 한함

구분	불허용도	비 고
가로환경 정비구역 (A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	-
이면부 주거지역 (B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	-

구분	불허용도	비 고
가로환경 정비구역 (A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	-
이면부 주거지역 (B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	-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(C)	○지정용도 외 불허	-

구분	불허용도	비 고
가로환경 정비구역 (A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휴게소	-
이면부 주거지역 (B)	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○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	-

구분	불허용도	비 고
가로환경 정비구역 (A)	○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○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○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휴게소	-
이면부 주거지역 (B)	○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○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	-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(C)	-	-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지정용도 신설 불허용도 변경 권장용도 변경	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계획 결정

(2)

구분	건폐율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60%이하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4조 준용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	
제3종일반주거지역	50%이하	

구분	건폐율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60%이하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4조 준용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	
제3종일반주거지역	50%이하	
준주거지역	60%이하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구분	건폐율	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80%이하	200%이하	공공시설 제공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)	-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			
제3종일반주거지역	210%이하	250%이하		

구분	건폐율	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80%이하	200%이하	공공시설 제공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)	-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			
제3종일반주거지역	210%이하	250%이하		
준주거지역	기본용적률: 400%이하		법정용적률 이하 ^{주1)}	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주1)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의 용적률 기준 준용

구분	용 적 률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	-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50m이하	-
제3종일반주거지역	50m이하 (일부 이면부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)	-

구분	용 적 률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	-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50m이하	-
제3종일반주거지역	50m이하 (일부 이면부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)	-
준주거지역	최고높이 50m이하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() :

구 분		내 용	계획 사항	비고
공 공 기 여 율	공공시설 등 설치·제공비율	○ 기본공공기여율 - 부지면적의 15%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	○ 부지면적 기준 197,585㎡(15.094%) = 114,631㎡ + 34,712㎡ + 48,242㎡ = 197,585㎡ -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: 114,631㎡(8.757%) / 6세대 - 공공시설 부속토지면적, 공사비 환산면적 : 34,712㎡(2.652%), 48,242㎡(3.685%) ○ 추가공공기여 - 공공임대주택(7세대) : 588,809㎡(44.982%)	
		○ 추가공공기여율 - 기본용적률(400%)에서 증가되는 용적률(89.489%)의 50% (44.744%)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		
건축물 용 도 구 분	비주거비율	○ 15%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)	○ 주거:비주거=90.54%:9.46%	
	주거비율	○ 85%이상		
주 택 건 설 비 중	주택규모	○ 주택 건설규모 : 실사용면적 : 25㎡ ~ 60㎡ - 1인(세여형 포함) 세대 : 실사용 25㎡ 이상 - 2인 이상 세대 : 실사용 45㎡ 이상	○ 공공임대주택:전용 44㎡, 52㎡, 57㎡ ○ 민간임대주택:전용 25㎡, 26㎡, 27㎡, 36㎡, 37㎡, 41㎡, 44㎡, 52㎡, 57㎡	
건축물 형 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○ 리모델링이 쉬운구조,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효율 건축물, 친환경건축물,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	○ 친환경건축물(우수), 에너지효율건축물(2등급) 이행 목표적용	
주 민 공 동 시 설	주민공동시설	○ 해당없음	○ 법적기준 : 150㎡(①+②) ① 주민공동시설 : 해당없음 ② 커뮤니티시설 : 150㎡ ○ 계획 : 161,288㎡ (주민카페, 코인세탁실, 주민운동시설)	
	커뮤니티시설	○ 「청년주택운영기준」 3-3-8 - 100세대이상:150㎡ 이상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적용

※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·허가 시 변동될 수 있음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용적률 적용기준 결정	○역세권청년주택 건립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따른 개발밀도 계획 결정

(3)

()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목적
건축한계선	◦ 10~20m도로변 (광운길, 광운4길)	◦ 대지경계선에서 2m	◦ 보행환경개선 ◦ 전면공지 확보 ◦ 가로개방감 확보
	◦ 이면부 4m이하 도로	◦ 도로중심선에서 3m	◦ 접근체계 확보(6m도로확보)
	◦ 이면부 4~8m이하 도로	◦ 도로중심선에서 4m	◦ 접근체계 확보(8m도로확보) ◦ 보행환경개선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목적
벽면지정선	◦ 20m도로변 (광운길)	◦ 대지경계선에서 2m	◦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 도모 ◦ 보행공간 확보 ◦ 전면공지 확보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건축 한계선	저층부 형 태	◦ 투시벽(1층 전면 벽면의 50%)이상 및 투시형 셔터 설치 ◦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(단,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.) ◦ 개구부 없는 벽면의 전면도로변 노출 금지 (단,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) ◦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 ◦ 1층부 연도형 상가 형태 권장	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적용
건축물 외관	입 면	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◦ 조립식 무피복철골조,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권장	-
	색 채	◦ 주변건축물과 조화되는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◦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파스텔 톤 색채 권장	-
	야간 조명	◦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 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,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 활동 활성화 유도 권장 ◦ 환경정비대상가로변 경관조명 설치	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적용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기타 사항	자연지반 보존	○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, 저층부의 바닥,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	-
	옥상녹화	○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장소와 도시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설치 권장	-
	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	○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열섬효과 방지 등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설치 권장	-
	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	○ 도시내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	-
	신·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약	○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태양열, 바이오 에너지, 풍력,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	-
	생태면적율	○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 ○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생태면적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	-
	담장 및 옹벽처리	○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○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	-

)

(1)

()

구 분		계획내용	적용목적
전면공지	광운길변	○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을 통한 전면공지확보 ○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○ 조성지침 -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(보도가 없을 경우 별도 보도 조성) -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	벽면지정선 2m 건축한계선 2m
공개공지(위치지정)		○ 주요 보행결절점에 설치	1개소

(2)

()

구 분	계획내용	적용목적
공공보행통로	○ 보행흐름의 연속성 및 보행우회 방지 - 폭원 : 3m	1개소

(3)

()

구 분	계획내용	적용목적
차량출입불허구간	○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○ 광운길, 광운4길변 지정	1개소
제한적 주차출입금지구간	○ 공동개발 권장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를 차량출입 허용	-
공동주차출입구	○ 광운길 광운 길변 획지 중 이면가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정	-

(4) ()

구 분	계획내용	적용목적
보행자우선도로	○ 광운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면도로 일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설정하여 보행환경 개선	-

(5) ()

(6) :

구분	용적률	공공기여 기준	계획내용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	기본 용적률	용도지역변경부지 면적의 15%이상 (196.350㎡이상)	○ 기본공공기여율: 197.585㎡(15.094%) - 공공임대주택(6세대): 114.631㎡(8.757%) - 공공시설(근생4호): 82.954㎡(6.337%)	월계동 390-3, 390-4, 390-13, 390-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공공임대주택 완화용적률의 50%	상한 용적률	완화용적률의 50% (585.704㎡이상)	○ 추가공공기여율: 공공임대주택(7세대) : 588.809㎡(44.982%)	
공공시설	-	공공시설(지상2층) 조성 후 기부채납	○ 공공시설 전용면적 : 125.296㎡	작은도서관

※ 공공기여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

) :

2. :

3. :

4. 「 」 3 .

1)

연번	소재지		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	
	행정동	지번	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		본번	부번										
1		390	3	도	145	145	[위탁자] 주식회사 플랫101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, 305-1035호 (별내동, 별내로데오몰)	1/1	-	-	-	
2		390	4	대	443	443				-	-	-	
3		390	13	대	183	183				-	-	-	
4		390	32	도	163	163	[수탁자]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		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)	-	-	-
5		390	35	대	737	737					-	-	-
합계					1,671	1,671							

2)

연번	소재지	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사용 승인일자		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		연면적 (㎡)	지하 (층)	지상 (층)		성명 또는명 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		본번	부번												
1	노원구 월계동	390	4	대	교육연구시설 (유치원)	철근 콘크리트조	1996.05.23	752.6	1	3	주식회사 플랫101	-	-	-	-
2		390	13	대	주택	연와조	1980.09.08	162.81	1	2		-	-	-	-
3		390	35	대	근린생활시설	철근 콘크리트조	1983.08.04	650.76	1	3		-	-	-	-
합계								1,566.17							

3) : 100%

4) : ,

5.

1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A	4~6m	국지도로	75	월계동 390-7	월계동 388-2	일반도로	-	-	-

-

2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전용면적	비고
공공시설	작은도서관	문화시설	지상2층	125.296㎡	-

-

6. : 「 」 「 」 ,

7.

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,671.0	100.0	
주택건설용지	1,309.0	78.3	역세권 청년주택
도 로	362.0	21.7	-

: [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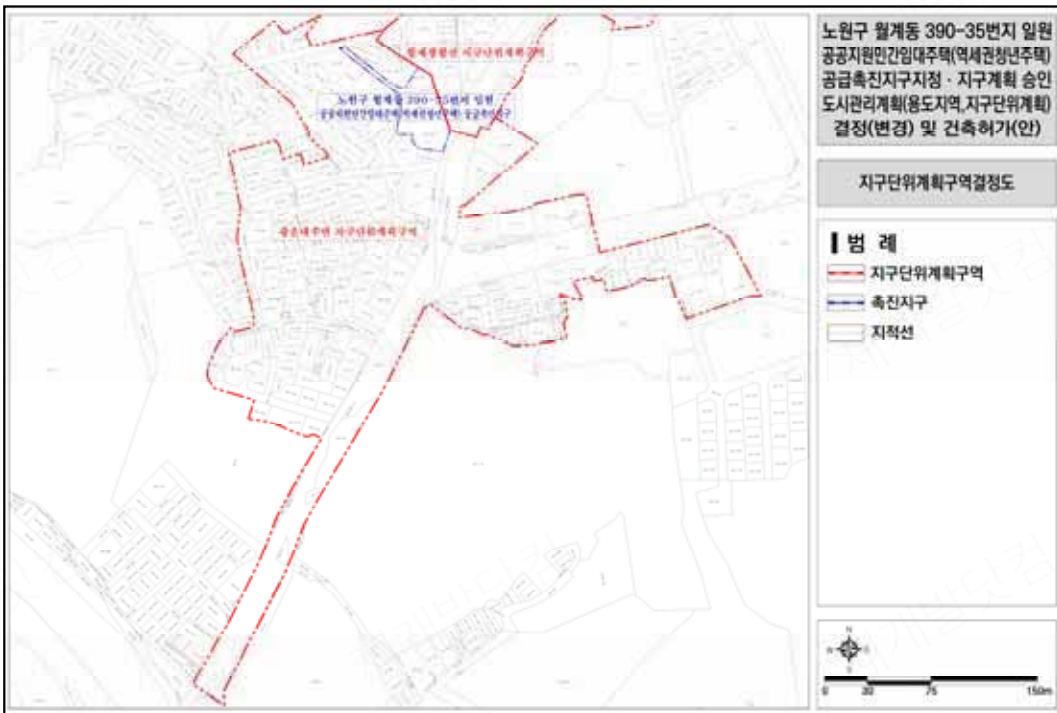
<

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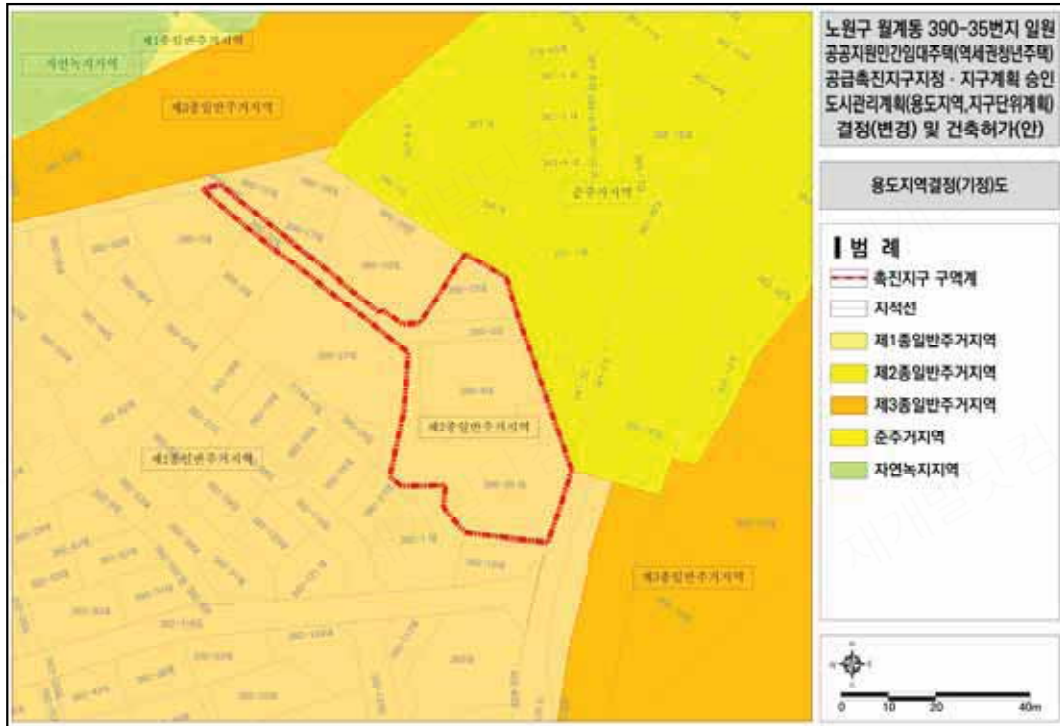


<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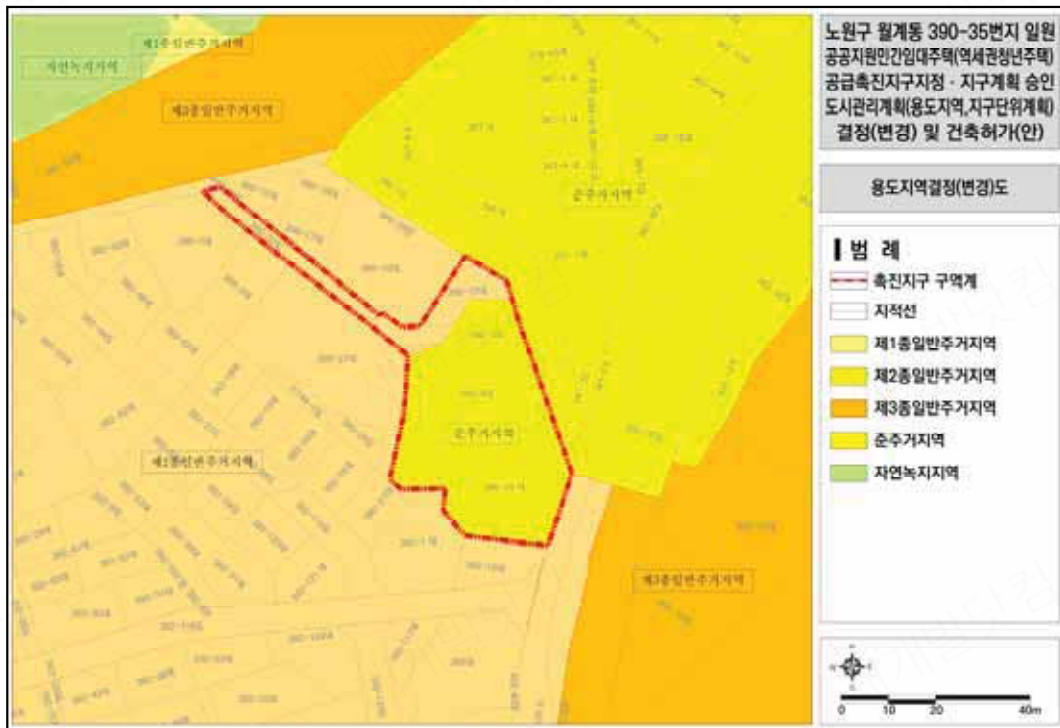
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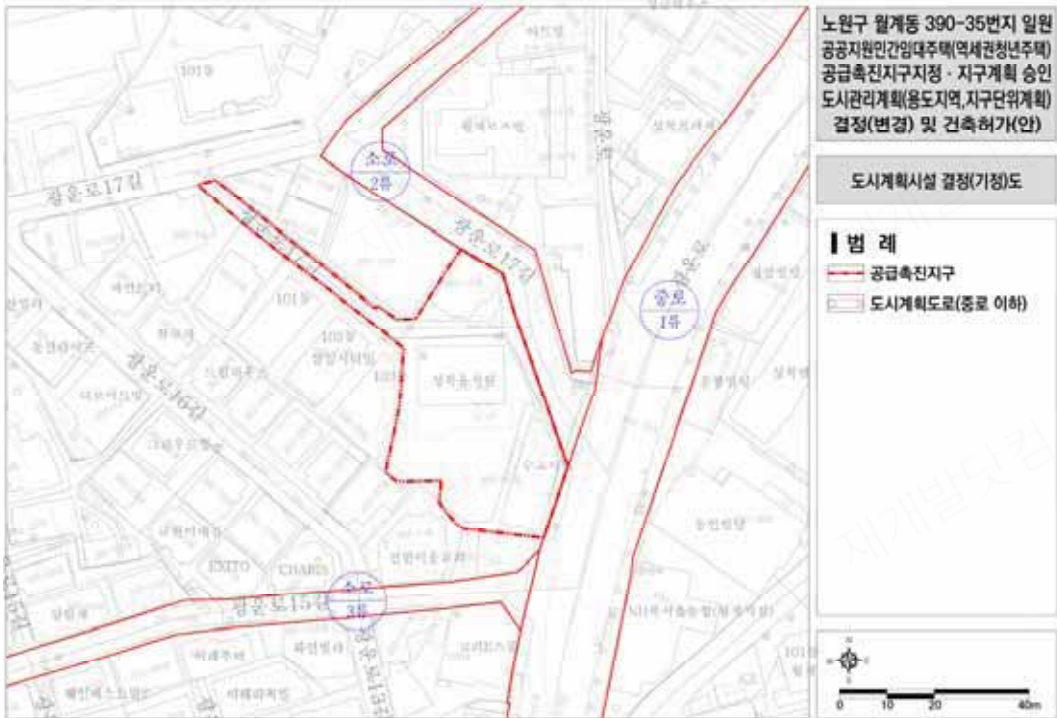
< () >



< () >



< () >



< () >



